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4
----------	-----

2019. 7. 2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7. 05.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19. 7. 18.)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자 :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이용과 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허가대상 시설물 :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3층 일부공간(34.43㎡)

나. 사용기관 :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장태성)

다. 사용기간 : 2019. 8.1 ~ 12. 31

※ 2층 무상사용기간이 종료(12.31) 되면 2층3층을 합쳐 무상사용 재허가 신청 계획임

라. 사용목적 : 재단 사무공간

마. 설 치 비 : 15,100천원 ※ 2019년 2차 추경시 예산편성 완료

바. 사 용 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면제’

사. 사용면적 : 34.43㎡ ※ (현행) 160.27㎡ ⇒ (확대) 194.43㎡

현 행			확대 후		
구분	사용용도	무상허가기간	구분	사용용도	무상허가기간
2층	강남복지재단 (160.27㎡)	2017.1.1.~2019.12.31.	2층	강남복지재단 (160.27㎡)	2017.1.1.~2019.12.31
3층	<u>청년창업지원센터</u> (34.43㎡)	-	3층	<u>강남복지재단</u> (34.43㎡)	<u>2019.8.1.~2019.12.31</u>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안” 및 “추경 예산(자산취득비 15,100천원)”이 지난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바 달리 의견은 없으나, 사용기간을 금년도(2019. 8.1~12.31)로 한정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시설과 합쳐서 무상사용을 신청할 계획으로 제출된 바, 지속적인 무상사용이 필요한 지 등의 정책적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사용기간을 금년 12월말로 정한 이유는
- 답 변: 기존의 2층 사무실 사용기간도 금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번에 동의를 구하는 3층 무상사용 사무실의 사용기간도 같은 기간으로 하여, 향후 2층과 3층을 묶어서 의회에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질 의: 기존에 3층 일부공간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용 공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답 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용공간은 축소되어 8층부터 10층까지만 사용 예정임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불 임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안 번호	154
----------	-----

제출년월일 : 2019. 7. 5.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복지정책과

1. 제안이유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이용과 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강남구의회 동의록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2. 동의내용 :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

가. 허가대상 시설물 :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3층 일부공간(34.43㎡)

나. 사용기관 :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장태성)

다. 사용기간 : 2019. 8.1 ~ 12. 31

※ 2층 무상사용기간이 종료(12.31) 되면 2층·3층을 합쳐 무상사용 재허가 신청 계획임

라. 사용목적 : 재단 사무공간

마. 설치비 : 15,100천원 ※ 2019년 2차 추경시 예산편성 완료

바.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면제’

사. 사용면적 : 34.43㎡ ※ (현행) 160.27㎡ ⇒ (확대) 194.43㎡

현행			확대 후		
구분	사용용도	무상허가기간	구분	사용용도	무상허가기간
2층	강남복지재단 (160.27㎡)	2017.1.1.~2019.12.31.	2층	강남복지재단 (160.27㎡)	2017.1.1.~2019.12.31
3층	<u>청년창업지원센터</u> (34.43㎡)	-	3층	<u>강남복지재단</u> (34.43㎡)	<u>2019.8.1~2019.12.31</u>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